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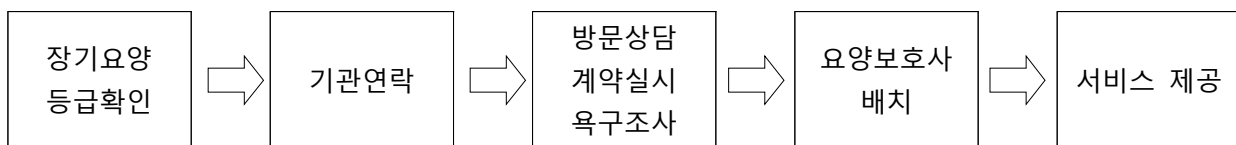
1.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

-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②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서비스 이용계약

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진행하며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.

3. 서비스 이용계약 절차



4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 단,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.
-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 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5. 이용자의 책임 이행

-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- ② 이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④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이 예방하며,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 (단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기관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.)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을 지정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지정한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 -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서비스 불만족 등의 사유로 기관 변경 및 계약 해제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 -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 -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, 응급 상황 및 관리상 필요 요청 등에 대해 즉시 응할 의무
 -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7. 계약의 해제

기관과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- ① 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 -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 -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
- ② 이용자(또는 보호자)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

- 다.
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(또는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8.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

- ① 이용자(보호자)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,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이용자(보호자)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.
- ② 이용자(보호자)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.
- ③ 이용한 본인부담금은 계약해지일 이후 10일 이내에 기관의 계좌로 지불한다.

9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월 이용료
 -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라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책정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.

<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>

◎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

◎ 방문요양 수가

방문요양 수가			
서비스 제공분	수가	서비스 제공분	수가
30분	16,630	150분	48,250
60분	24,120	180분	54,320
90분	32,510	210분	60,530
120분	41,380	240분	66,770

◎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금 비율

소득기준 본인 부담금							
일반	15%	경감- 보험료순위 25%초과~50%이하	9%	경감 보험료순위25%이하	6%	수급권자	0%

-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.
- 이용료는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순위에 따라 9%, 6%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며 일반대상자일 경우 본인 부담금 15%를 내도록 한다.

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장기요양 급여 외의 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.
- 서비스 이용시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